

정부합동대책반 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
2016년 5월 27일(금) 15: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국무조정실, 통일부 공동배포)

담당: 현장기업지원반

총괄팀장 강경성(02-2100-2601), 이용훈 서기관(02-2100-2600)

금융팀장 손병두(02-2156-9750), 박보란 사무관(02-2156-9753)

기업전담지원팀장 김병근(042-481-4550), 양승욱 사무관(042-481-4543)

고용지원팀장 김경선(044-202-7210), 고민진 사무관(02-2100-2601)

그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등 추진현황 점검 및 기업·주재원 지원방안 마련

- 정부는 5.27(금) 오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「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」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,
 - 그간 5차례 회의를 통해 발표되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의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,
 - 기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성공단 기업 및 주재원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

1. 그간 정부 지원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

- 정부는 2월 11일 정부합동대책반 구성 이후 5차례 회의를 통해 발표된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(⇒ 참고)
- 현재까지 1,900억원을 신규로 대출(292건), 기존대출 1,738억원(192건)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, 76개 기업에 남북경협 보험금 2,319억원을 지급하였음

- 대체공장 확보 지원을 통해 9개 기업이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고, 6개 기업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화산업단지에 입주계약 완료
 - 대체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취업을 알선하여 개성공단 기업이 81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
- 또한, 국세·지방세(583억원, 250건)의 납기를 연장하고, 징수·체납 처분을 유예하였으며, 8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·중단하였음
 - 고용·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감면, 체납처분 유예도 차질 없이 시행 중
-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전담지원팀을(중기청) 통해 1:1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조속한 생산·경영정상화를 돕는 한편,
 - 근로자지원팀(고용부)을 통해 실직자 재취업 알선 등 근로자 밀착 지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

2. 실태조사 결과와 개성공단 기업·주재원 지원방안

(1) 실태조사 결과

- 정부는 「개성공업지구지원법」에 따라 기업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3.17부터 5.10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
- 총 303개 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은 9,446억원이며,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은 7,779억원임 (82% 확인)
 - * 확인 금액중 △투자자산은 5,088억원(신고 5,654억원) △유동자산은 1,917억원(신고 2,317억원) △기타 위약금 및 개성 현지 미수금은 774억원(신고 1,475억원)
- ※ '13년 중단시 기업 신고금액은 1조 566억원, 확인 금액은 7,067억원(67% 확인)

- 이번 실태조사는 객관성·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음
 - 「민관평가자문위원회」가 실태조사 전반을 자문하는 동시에 신고기간 연장, 확인 피해금액 열람 등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였고, 전문회계기관이 증빙서류를 통해 신고금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였음

(2) 개성공단 기업 지원방안

- 정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하에
 - 기업들의 피해규모, 가용재원, 기존의 경협·교역 보험제도의 지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들의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
- 토지, 공장,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경협보험 제도를 토대로 지원하고, 보험 미가입 업체도 일정수준 지원할 계획
 - 먼저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(지원을 90%, 지원한도 70억원)하되,
 - 보험계약 한도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높은 대북투자 제한을 위해 한도가 설정된 취지를 고려하여 보험 미가입 기업의 절반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음(지원을 22.5%, 한도 17.5억원)
 -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지원하되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(지원을 45%, 지원한도 35억원)
- 기업의 원부자재,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하여는 현재 교역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 특별지원 차원에서 교역보험 제도의 틀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음

- 기존 교역보험의 지원율 70%, 지원한도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,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'09년 교역보험 도입당시에 비해 증가한 교역량을 감안하여 한도를 22억원으로 높이기로 하였음

(3) 개성공단 주재원 지원방안

□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해서는 공단중단에 따른 물적·정신적 피해, 생계부담 등을 고려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

- 개성공단 주재원에게 근로자 월 임금*의 6개월분을 지급하되,

* (기준 임금)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 평균 임금

-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는 1개월분 지급

⇒ 기업 및 주재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약 5,200억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

※ 자료 문의는 지원대책별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대 책 | 소 속 | 성 명 | 연락처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
|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| 통일부 제도개선과 | 최병환 과장 | 02-2100-5980 |
| | | 마호성 사무관 | 02-2100-5981 |
| 개성공단 기업 지원 | 통일부 기업지원팀 | 백상열 팀장 | 02-2100-5992 |
| | | 조영석 사무관 | 02-2100-5993 |
| 개성공단 주재원 위로금 지원 | 통일부 기획총괄과 | 김종우 과장 | 02-2100-5960 |
| | | 김기혁 사무관 | 02-2100-5961 |

참고

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 주요 추진실적 (5.26일 기준)

| 분류 | 주요 대책 | 세부 지원내용 | 추진 실적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자금 지원 | ① 남북협력기금 연장 및 경험 보험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보험가입기업(112개)에 보험금(총 2,906억원) 지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80개사 346억원 76개사 2,319억원 지급 (가지급 26건 486억원, 본지급 68건 1,833억원) |
| | ② 대출금 상환유예, 이자상환 유예 | 공공·민간 금융기관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, 중진공 정책자금 이자상환 유예 | 192건 1,737.8억원 |
| | ③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|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에 대한 대출 및 금리우대 | 90건 590.5억원 |
| | ④ 5,500억 규모 특별대출 | 공공·민간 금융기관 및 중진공 운영·시설 자금대출 | 235건 1,425.5억원 |
| 세제·보험 지원 | ① 국세·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| 법인세·부가세 신고·납부 기한, 既고지 세금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| 납부기한 연장 86건 503억원, 징수 유예 31건 14.9억원, 체납처분 유예 23건 6.6억원 |
| | ②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| 지방소득세 등 신고·납부 기한, 既고지 세금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| 납부기한 연장 51건 49.7억원, 징수 유예 2건 0.69억원 |
| | ③ 세무조사 연기 | 조사 착수 원칙적 중단, 진행 중인 경우 신청시 연기·중지 | 국세청 세무조사(12개), 지자체 세무조사(73개) 착수 중단 |
| | ④ 고용·산재·건강보험 감면 및 납기, 체납 처분 유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·산재보험은 입주·영업 기업 대상 6개월간 30% 감면 건강보험은 개성공단 근무 직원에게 6개월간 50% 감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16개사 고용·산재보험료 경감 신청 건강보험 경감유지 고시개정(3.16), 보험료 경감 607명 |
| 정부 조달·판로 | ① 정부조달 납기 연장 | 납품연기 요청시 즉시조치 및 관련 제재 면제 | 계약진행업체(3개) 안내 공문 발송(2.17), 납기연장 조치(10건) |
| | ② 정부조달 참여 우대 | 정부입찰·우수제품 심사 한시적(1년) 가점 부여 | 구매적격심사기준 개정·시행(3.2), 우수물품지정규정 개정·시행(3.9) |
| 고용 안정 | ① 근로자 고용 안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* 1일 4.3만원限(180일) 협력기금 활용 추가지원 * 1개월 65만원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97건 739명 접수 72건 256명 접수 |
| | ② 장년인턴제 요건 완화 | 최저임금 110% 이상 요건 → 최저임금 이상 | 장년인턴제 지원요건 완화 운영지침 개정(2.15) |
| | ③ 대체인력 고용 지원 | 상담, 훈련, 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 지원 | 취업지원 상담 185건, 접수 67건, 취업알선 59건(취업자수 88명) |
| | ④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완화 | 쿼터 확대 및 기업별 한도 40%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심의(2.24) 고용허가서 발급 69명, 국내 신규 도입 25명 |
| 생산 기반 | ① 국내 대체공장 신설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식산업센터(산단공) 대체 공장 배정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개 업체(11개 호실) 입주계약 체결 9개 기업과 지자체(부산, 대전, 세종, 전주, 상주, 등) 투자 MOU 등 협약체결(2/4분기 보조금 신청 예정) |
| | ② 창고이용 지원 | 공동물류센터(산단공) 등 물류창고 저가이용 지원 (1년 무상, 2년 50% 할인) | 남동물류센터 내 임대가능 창고 물량 파악 및 임대료 할인(5.5%) 협의 완료 |